인천 검단신도시 AB2블록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05.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한 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우선공급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부칙 제3조에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민영주택의 추첨제 공급 시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우선 공급받은 후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에서 공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주택법」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 사실을「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nsvi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

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 및「인천광역시 서구 공고」제2016-1688호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가점제로, 나머지는 8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 85㎡ 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 85㎡ 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검수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19.12.10.(화)**	**2019.12.11.(수)**	**2019.12.12.(목)**	**2019.12.18.(수)**	**2019.12.20.(금) ~2019.12.30.(월)**	**2020.01.06.(월) ~2020.01.08.(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17:00)	견본주택 (10:00~16:00)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당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 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2019.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일부 내용의 시행 시기가 20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해당 내용은 2018.12.11. 이후 반영된 내용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17093호(2019.12.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 12개동 총 1,073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7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4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19001045-01	84.7322	84	84.7322	24.4770	109.2092	60.2243	169.4335	51.5750	748	74	149	74	22	**319**	429	31	**2022년 07월**
	2019001045-02	94.9550	94	94.9550	27.0764	122.0314	67.4903	189.5217	57.7975	325	0	0	32	9	**41**	284	14	
	합 계									1,073	74	149	106	31	**360**	713	4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구분	공 급 세대수	층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지정일
								계약시	30일 이내	2020.05.14	2020.09.14	2021.01.14	2021.05.14	2021.09.14	2022.01.14	
84	84	748	1	18	144,221,347	243,978,653	388,200,000	10,000,000	2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2	24	146,450,425	247,749,575	394,200,000	10,000,000	2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118,260,000
			3	31	148,679,503	251,520,497	400,200,000	10,000,000	3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120,060,000
			4	31	150,537,068	254,662,932	405,200,000	10,000,000	30,520,000	40,520,000	40,520,000	40,520,000	40,520,000	40,520,000	40,520,000	121,560,000
			5-15	341	152,023,120	257,176,880	409,200,000	10,000,000	3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122,760,000
			16층 이상	303	153,509,172	259,690,828	413,200,000	10,000,000	3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123,960,000
94	94	325	1	8	151,725,909	256,674,091	408,400,000	10,000,000	3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122,520,000
			2	11	154,326,500	261,073,500	415,400,000	10,000,000	3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124,620,000
			3	14	157,298,604	266,101,396	423,400,000	10,000,000	3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42,340,000	127,020,000
			4	14	161,385,247	273,014,753	434,400,000	10,000,000	3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130,320,000
			5-15	154	165,100,377	279,299,623	444,400,000	10,000,000	3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133,320,000
			16층 이상	124	169,558,533	286,841,467	456,400,000	10,000,000	3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136,92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84.7322**	**94.9550**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84	9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세대수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Ⅱ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12.10.(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견본주택(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당첨자 계약 체결일 : 2020.01.06.(월) ~ 2020.01.08(수) [3일간, / 시간 : 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제9호의 소형·저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 또한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 (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 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84	9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서울,인천,경기)	23	0	23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2	0	12
		국가유공자	12	0	12
		장기복무 제대 군인	12	0	12
		중소기업근로자	12	0	12
		북한이탈주민	3	0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7	16	53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37	16	53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우선공급 75%]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6	0	56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56	0	56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일반공급 25%]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9	0	19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18	0	1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1	5	16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11	4	15
합 계			**319**	**41**	**360**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7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인천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인천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10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05.08.)]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배점에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대상세대 : 총 14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 재혼포함)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 자녀 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내 거주자(50%) 순으로 우선 공급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내 거주자(50%) 순으로 우선 공급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의미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세대 : 총 3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방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배정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어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미성년자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합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자격
민영주택	인천광역시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1순위	전용 면적 85㎡ 이하	• 가점제 20%, 추첨제 8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전용 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기준"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감액 사유시 변경 불필요)

• 거주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인천광역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
- 수도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자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별표 1] 1호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의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 28조 제 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이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방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하며,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가점제로, 나머지 8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점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본 주택은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 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Ⅲ 청약신청 및 당첨자 서류접수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12.10.(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일반공급	1순위	**2019.12.11.(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12.12.(목)** 08:00~17: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사전 서류 접수기간에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APP으로 청약하신 분은 '정보입력'조회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는 각 당첨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자격 확인 서류를 견본주택으로 제출하고, 서류 검수 결과 적격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제출기간	2019.12.20.(금) ~ 2019.12.30.(월), 10:00 ~ 17:00
제출장소	당 사업지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4-1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모델하우스
유의사항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및 계약 체결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전접수 없이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절차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해 검수 일정 및 운영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을 위한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유형별 구비서류 안내(공통)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 / 일반공급)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거주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 대조필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인감증명서	청약자	본인발급용,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의 수에 포함시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접수장소 비치)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의 수에 포함시켜 인정받으려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용,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19세이상 세대원	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의 수에 포함시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의 수에 포함시켜 인정받으려는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접수장소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접수장소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및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서류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일반공급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가 확안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부양가족에 산정하였으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모든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Ⅳ 계약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19.12.18.(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접수기간 : **2019.12.20.(금) ~ 2019.12.30.(월)** • 접수기간 : 10:00 ~17:00 • 접수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 **2020.01.06.(월)~2020.01.08(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4-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재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당첨분은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2.18.(수) ~ 2019.12.27.(금)**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12.1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O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조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O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용도 : 아파트계약용 /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O	자격검증서류	사전 서류접수 시 미제출자에 한함, 상기 당첨 유형별 구비서류 참조	
		O	추가 개별통지서류	사전 서류검수 시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O		위임장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인감도장(상기 본인계약시의 인감증명서와 별도, 본인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전부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하여, 대리인 계약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신 분은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불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02-910064-16104**	**㈜신안**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0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1차, 2차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2차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작은도서관(북카페), 키즈클럽,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함**

V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0.05.14	입주지정일	
84	15,170,000	1,517,000	1,517,000	12,136,000	공사부위 견본주택 및
94	16,440,000	1,644,000	1,644,000	13,152,000	계약 시 확인 필요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확장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신 분은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불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02-910064-17804**	**㈜신안**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선택안	설치 대수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옵션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10%) 2020.05.14	잔금(80%) 입주지정일
84	1안	2대	안방 + 거실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2안	4대	안방 + 거실 + 침실1 + 침실2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94	1안	3대	안방 + 거실 + 주방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2안	5대	안방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8,900,000	890,000	890,000	7,120,000

- 제조사 : LG전자
- 상기 시공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2) 양문형 냉장고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모델	제조사	옵션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10%) 2020.05.14	잔금(80%) 입주지정일	비 고
84	S711TK24B	LG전자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계약시 견본주택 확인 필요)
94	S711TK24B	LG전자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3) 김치냉장고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모델	제조사	옵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 시	2020.05.14	입주지정일	
94	K221PR14BL1/R1	LG전자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계약시 견본주택 확인 필요)

4)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모델	제조사	옵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 시	2020.05.14	입주지정일	
84	S3HFB	LG전자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계약시 견본주택 확인 필요)
94	S3HFB	LG전자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5)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신 분은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불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플러스옵션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이에 대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02-910064-18404**	**㈜신안**

- 상기 계좌는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 공기청정 시스템은 청정 모드(실내공기 순환 모드)에만 고청정필터(헤파필터)가 적용되며, 환기 모드에는 청정 필터가 적용됩니다.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주방, 식당), 침실, 복도 <타일,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발코니, 욕실바닥, 실외기실, 대피공간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벽, 천정재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타일> : 거실아트월, 주방벽, 욕실벽 <기타> : 몰딩, 우물천정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욕실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양변기, 비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쿡탑, 렌지후드,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현관창고, 팬트리도어, 파우더장, 드레스룸도어, 시스템장	없음
창호 및 기타사항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침실1)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84	94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27,029,000	31,099,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Ⅵ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급의 경우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

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사업주체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발코니 샤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Ⅶ 단지 여건 사항

▣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인천검단신도시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원당-태리간광역도로, 검단-경명로간도로, 송포-인천간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지 북측 공동주택 AA1BL, 단지 서측에 위치한 AB4BL, 단지 동측에 위치한 AB1BL 아파트 및 단지 남측에 위치한 유통시설로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남측: 폭20M, 서측: 폭33.5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시설용지)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사업지 인근 신설학교(가칭 검단2초) 개교 전 입주시 인근학교(원당초, 발산초, 창신초 등)에 분산 배치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 신설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분산배치 시 사업자가 제시한 통학안전대책(통학버스 등)을 수립 시 학생 배치가 가능합니다.
가. 인근학교 버스통학을 위한 조건
- 사업자 또는 수분양자 책임 하에 인근학교까지 통학버스 운영할 것
- 운전자, 안전요원, 학생 외 탑승 불가
- 도보통학 및 통학버스 운행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배치학교 또는 교육청에 요구할 수 없음.
• 중·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가 가능합니다.
• 가칭 검단1중, 검단2중, 검단1고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현재 학교의 위치가 남쪽으로부터 '유1-초1-중1-고1', '초5-중2-고2'순서로 변경 예정입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 향,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당사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설치 예정이나, 당사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차량 진출입구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101동, 108동, 109동, 112동 등)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10동 및 111동 사이에 선큰광장 및 단지 보행자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아파트 진출입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데크주차장으로 전 동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09동 지하 1층과 인접하여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위치는 101동과 112동 및 108동과 109동 사이에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 지하층 출입을 고려하여 지하 1층 주차통로 천정고는 2.7M로 계획 되었습니다(단 지하2층의 일부 천정고는 2.1M~2.3M이상이므로 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 진입가능함). 단,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지하 1층에 설치되고, 전면부에 선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출입은 선큰을 통해 외부로 진입이 가능하고 지하 1층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 휴게공간,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 101동 및 102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1 / 104동 전면, 105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2 / 108동 후면 어린이놀이터3 / 103동 전면에 유아놀이터 설치
- 주민운동시설 : 102동 후면, 103동 측면에 주민운동시설1 / 105동 및 106동 전면에 주민운동시설2 설치
- 주민휴게 공간 및 광장 : 단지 중앙부 중앙잔디광장 / 110동 및 111동 사이, 커뮤니티센터 전면 선큰광장 설치
- 기타부대시설 : 108동 및 109동 사이 경비실 및 문주 / 101동, 112동 전면 문주 / 103동, 104동 전면, 112동 후면 사이 어린이집 / 112동 전면 근린생활시설 및 경비실 / 110동 및 111동 사이, 커뮤니티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등 설치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전면 쪽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선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에 TV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기준)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101동,103동,107동,109동,110동 지붕층(5개소)/109동, 112동 인근 지하1, 2층 주차장 휀룸 (4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방법 및 방송 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Ⅷ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1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천정시공으로 노출되지 않으나 환기유니트 커버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됩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은 동 형태에 따라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는 당사 홈페이지(www.ensvil.com/geomdan)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검단신도시 AB2블록 신안인스빌
2. 신 청 자: ㈜신안
3.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신도시 AB2BL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고형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자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자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변개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본도소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사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필로 화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큰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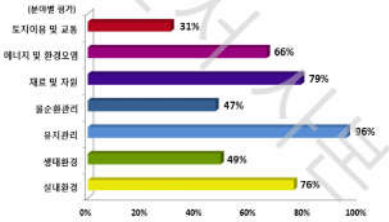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120g/㎡]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검단신도시 AB2블록 신안인스빌	인증번호	KGBC-C-a-572
건 축 주	㈜신안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준공(예정)일	2022.07.31.	유효기간	2019.10.11.~사용검사일까지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신도시 AB2BL	인증 등급	
층 수	지하2층, 지상25층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연 면 적	188,655.9794㎡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3) [별표1]신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 계 자	㈜리엘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19년 10월 11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인)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검단신도시 AB2블록 신안인스빌	인증번호	19-주-에-1-0864
준공연도	2022년 07월 31일	평가자	김지한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신도시 AB2BL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20~25층 (12개동)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188655.9794(㎡)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주)리엘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설계	100.7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26.3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6.0	73.7	55.7	12.4
급탕	30.7	38.3	28.2	6.3
조명	14.1	12.6	34.8	5.9
환기		3.5	9.7	1.7
합계	100.7	128.1	128.4	26.3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됨[✔]설치되지 않음)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9월 26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인증증명 확인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한국환경종합건축사무소	태양기술단(주)	㈜건일엠이씨	㈜건일엠이씨
감리금액	2,454,307,900	660,034,740	247,500,000	115,5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27,631,084,570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44,043,032,000	공사비	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1,943,679,000
		기간이자	4,309,843,181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2,990,735,000
		필요적경비	6,655,874,228			조직공사	1,743,716,000			가스설비공사	874,282,000
		그 밖의 비용	-			미장공사	1,913,840,000			자동제어설비공사	491,503,000
		계	138,596,801,979			단열공사	2,776,859,000			특수설비공사	1,525,809,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3,005,757,000			방수, 방습공사	1,741,543,000			공조설비공사	-
		흙막이공사	1,121,716,000			목공사	3,479,437,000		그밖의공종	전기설비공사	14,780,612,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5,527,256,000			정보통신공사	9,416,220,000
		옹벽공사	269,931,000			금속공사	2,767,733,000			소방설비공사	12,497,892,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553,544,000			승강기공사	2,025,598,000
		우,오수공사	788,541,000			창호공사	6,493,005,000		그밖의공사비	일반관리비	7,254,768,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2,273,494,000			이윤	8,060,853,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2,972,575,000		계		176,532,721,000
		도로포장공사	923,100,000			돌공사	2,782,940,000	간접비	설계비		1,302,387,912
		교통안전시설물공사	49,078,000			도장공사	1,285,019,000		감리비		3,477,342,64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945,286,000		일반분양시설경비		15,579,564,000
		조경공사	5,545,868,000			수장공사	2,620,220,000		분담금 및 부담비		13,514,954,392
		부대시설공사	565,629,000			주방용구공사	4,156,691,000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4,304,437,000			그밖의건축공사	859,999,000		기타사업성 경비		58,182,628,000
		가시설물공사	1,403,635,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686,013,000		계		92,056,876,944
		지정 및 기초공사	2,713,747,000			급탕설비공사	1,791,759,000	그 밖의 비용			43,843,200,077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1,565,370,000	**합계**			**451,029,600,000**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19-101-0013800호	**₩315,720,72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u>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u>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신안	110111-0341703
시공회사	㈜관악	134811-0056756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4-1

▣ 사이버 견본주택 : www.ensvil.com/geomdan

▣ 분양문의 : ☎ 031)998-28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